



제 1066 호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11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례 제11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조례 제11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조례 제11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조례 제11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조례 제11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23
○ 조례 제11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조례 제11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공 고	
○ 공고 제2012- 1437호	건설업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38
○ 공고 제2012- 1440호	소액수의(구립도서관 비도서구입)견적제출 안내 공고 40
○ 공고 제2012- 1444호	소액수의(표준계량대 제작설치)견적제출 안내 공고 43
○ 공고 제2012- 1445호	공시송달 공고 46
○ 공고 제2012- 14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공고 49
○ 만수2동 공고 제2012- 38호	1통,28통장 공개모집 공고 54
○ 공고 제2012- 14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공고 55

회 람								
----------------	--	--	--	--	--	--	--	--

고 시

- 고시 제2012- 102호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
회 승인 취소 고시 66
- 고시 제2012- 103호 도로명주소 고시 67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1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8% 이내	23% 이내	31% 이내	31% 이내	6%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u>12% 이내</u>	<u>45% 이내</u>	<u>40% 이내</u>	<u>3% 이상</u>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 율	-	34% 이내	34% 이내	32%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향후 공무원 직종체계 변경계획에 따라 우리구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비교·분석 및 재조정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별표2) 변경
 - 기능6·7급 : 비율 상향 조정
 - 기능8·9급 : 비율 하향 조정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1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사건의 피소를 당한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근거 마련 및 이에 따른 고문변호사 정원 수를 증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정수 조정 : “3명 ⇒ 5명 ” (제2조)
- 소속 공무원의 민사·형사사건 피소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제6조의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1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구월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628의4, 13, 629의2, 1068의2 제외) 간석동으로 편입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 72의29 제외 수산동에서 편입된 수산동 185-38, 185-39, 185-40, 185-42, 191-4, 192-2, 193, 194-1, 597-37 포함
	간석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225-23, 225-88, 225-254, 225-255, 225-256, 225-279, 산37-20, 산38-5 제외) 구월동에서 편입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 72의29 포함
	만수동 일원(장수동에서 편입된 68, 681-1, 3, 682-1, 2, 4-8, 11, 12, 684의4, 8, 9, 685의 5-7, 761의1 포함, 구월동에서 편입된 628-4, 13, 629의 2, 1068의 2 포함, 수산동에서 편입된 1의 1, 3, 8, 9, 11, 14, 19, 20, 22, 23, 24, 25, 26, 27, 2의 2, 3, 5, 6, 7, 21, 45, 47, 48, 49, 51, 52, 53, 54, 55, 56, 57, 58, 59, 695의 5, 6, 7, 8, 16, 29 포함, 간석동에서 편입된 225-23, 225-88, 22-254, 225-255, 225-256, 225-279, 산37-20, 산38-5 포함, 서창동으로 편입된 708-3, 709-3, 4, 710-1, 2, 3, 5, 6, 7, 8, 10, 711-1, 4, 712, 713, 714-1, 2, 715-1, 2, 716-1, 2, 717, 717의 1-9, 718의 1-4, 719, 719의 1-5,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1, 2, 730, 730-1, 731, 732, 733-1, 2, 734, 735, 736, 737-1, 738-1, 739-2, 815, 816-1, 3, 817-1, 818-1, 산87-1, 산88-1, 산89의 3-6, 산91의 3-4, 산99의 1-2, 산100-5, 산111의 3-4 제외, 장수동에서 편입된 685-1, 686, 687, 688-2, 688-4, 688-9, 689-4, 689-6, 689-13, 690-3, 698-3, 698-11, 699-1, 699-6, 700-1, 700-4, 700-5,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10, 710-3, 712, 713, 714, 761, 762 포함)
	장수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681, 681의 1, 3, 682의1, 2, 4-8, 11, 12, 684, 4, 8, 9, 685의 5-7, 761의1 제외, 만수동으로 편입된 685-1, 686, 687, 688-2, 688-4, 688-9, 689-4, 689-6, 689-13, 690-3, 698-3, 698-11, 699-1, 699-6, 700-1, 700-4, 700-5,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10, 710-3, 712, 713, 714, 761, 762 제외)
	서창동 일원(만수동에서 편입된 708-3, 709-3, 4, 710-1, 2, 3, 5, 6, 7, 8, 10, 711-1, 4, 712, 713, 714-1, 2, 715-1, 2, 716-1, 2, 717, 717의 1-9, 718의 1-4, 719, 719의 1-5,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1, 2, 730, 730-1, 731, 732, 733-1, 2, 734, 735, 736, 737-1, 738-1, 739-2, 815, 816-1, 3, 817-1, 818-1, 산87-1, 산88-1, 산89의 3-6, 산91의 3-4, 산99의 1-2, 산100-5, 산111의 3-4 포함) 운연동에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운연동	운연동 일원 서창동으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도림동	도림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584의31, 584의37, 584의6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6, 594의68-78,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2, 626의1-44, 627의1-3, 산103의1-2, 산104제외, 논현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626의9, 626의45-50, 627의28 제외) 논현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584의 97-98, 594의 20-23, 34, 36, 44, 45, 46, 48, 50, 51, 79, 80, 87-91, 595, 596 의 1-2, 597의 3-5, 498의4, 600의1, 601-607, 607의1-2, 620의1-2, 621의2, 산93의3, 산94의3, 산96의2, 산96의3, 산97의2-4, 산98, 산100, 산100의1-5, 산102, 산102의1-5, 산103의3 제외
	수산동	수산동 일원 (만수동으로 편입된 1의 1, 3, 8, 9, 11, 14, 19, 20, 22, 23, 24, 25, 26, 27, 2의2, 3, 5, 6, 7, 21, 45, 47, 48, 51, 52, 53, 54, 55, 56, 57, 58, 59, 595의5, 6, 7, 8, 16, 29 제외 (구월동으로 편입된 <u>수산동 185-38,185-39,185-40,185-42,191-4,192-2,193, 194-1,597-37 제외</u>)
	남촌동	남촌동 일원(도림동에서 편입된 도림동 584의31, 584의37, 584의6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6, 594의68-7,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1, 626의1-44, 627의1-3, 산 1031-2, 산104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된 논현동 472의8-11, 474의1, 481의3, 624의 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84의1,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597의69-72 포함)
	논현동	논현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논현동 472의8-11, 474의1, 481의3, 524의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48의1,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제외, 도림동에서 편입된 도림동 626의9, 626의45-50, 627의28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 산72의2, 산77의1-4, 산97-3, 산80의3 포함) 고잔동으로 편입된 383의25, 412의20, 21, 22, 23, 415의 57, 58 제외, 고잔동에서 편입된 255-6 포함 남촌동에서 편입된 남촌동 551의1-4, 도림동에서 편입된 도림동 552의1-41, 산 105의 1-21 포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81의1, 83의1-2, 83의4, 83의6, 84의1-4, 85의1-2, 85의4-6, 86의20-23, 87, 88의1-5, 89, 89의1-3, 90, 91의1, 92의7, 94의1-4, 94의8-14, 94의16-25, 95의1-2, 96, 97의1-10, 98, 99의1-2, 100의1-6, 101, 102, 103, 104, 105, 106, 106의1, 107, 108, 109, 110, 111, 112, 113의1-4, 114, 114의1-4, 115, 116, 117의1-3, 118의1-2, 119의1-8, 119의10-11, 119의13-21, 119의23-24, 119의26-28, 120의11, 121의6-10, 122, 123, 124의1, 127의4, 581의3-4, 586의11, 586의13-15, 586의26, 589, 590, 590의1-3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고잔공원 제외) 및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포함 서창동으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고잔동	고잔동 일원 (남촌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597의69-72제외 논현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2의1, 603의3, 622, 산72의2, 산77의1-4, 산79의3, 산80의3 제외) 논현동에서 편입된 383의25, 412의20, 21, 22, 23, 415의57, 58포함, 논현동으로 편입된 255-6 제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혼재된 법정동(구월동, 수산동)을 구월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준용 근거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제1조)
-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법정동인 '수산동(9필지 6,511㎡)' 을 '구월동' 으로 편입 조정함 (별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1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제2조 관련)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계	19	19	
	구월동	4	구월1동	구월동 201, 258, 260의 5호, 277-294, 300-301, 426-550, 577, 578의1, 2호, 580의1, 4, 5, 8호, 581-582, 583의4호, 584-596, 688의2, 7, 16호, 689-896, 1124-1240, 1408-1447번지 일원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구월2동	구월동 2-7, 20-26, 69-70, 341-342, 1251-1254번지 일원
			구월3동	구월동 산16, 산62, 산82-84, 179-180, 961의1호-969, 1034-1040, 1086-1123, 1342-1407번지 일원
			구월4동	구월동 산1-9, 산16의1호, 349, 551, 557-575, 580의6, 7호, 583의1호, 597-687, 688의1, 9호, 1255-1320번지 일원
	간석동	4	간석1동	간석동 177, 178, 331-333, 340-343, 351-353, 358, 397-406, 410-459, 463, 466-467, 470, 472, 481, 484-490, 492-520, 523, 542-559, 730-734, 758, 산83번지 일원
			간석2동	간석동 129-130, 133-146, 151, 153-160, 163-166, 182-197, 200-203, 205-210, 216, 217, 220-222, 228-241, 247-257, 267-271, 273, 275-277, 280-289, 295, 296, 298-313, 316-320, 326-328, 334-339, 344-348, 350, 구월동 71, 72번지 일원
			간석3동	간석동 1-10, 12, 20-24, 26, 28, 29-34, 37, 39-67, 69-115, 117-125, 167-175, 179, 180, 211, 212, 214, 224, 225, 227, 735, 736, 745, 746, 767, 산12, 산86번지 일원
			간석4동	간석동 359-362, 364-376, 378-384, 387-395, 524-537, 560, 561-613, 616의82, 83, 84, 85, 86, 762번지 일원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만수동	6	만수1동	만수동 346-353, 367-373, 422-424, 927-937, 948-983, 1005번지 일원 만수동 590의1호, 590의10호, 594의1호-594의20호, 808의42호,43호
			만수2동	만수동 산20, 1-5, 6-12, 41의1호, 32의8호, 35의8, 38의2호, 68, 71-76, 79, 80의1호-80의201호, 80의252호-80의486호, 80의500호-80의520호, 81, 83, 101-105, 107의21호, 867-874,1115-1번지 일원
			만수3동	만수동 80, 107, 109-111, 116, 844, 850-855, 857-866, 산1, 산11번지 일원
			만수4동	만수동 13, 17, 20, 29, 35, 46, 49-67, 84-90번지 일원
			만수5동	만수동 875-926, 938-947번지 일원
			만수6동	만수동 289-291, 332-339, 600-810, 984-987, 1008-1049번지 일원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1	장 수 서창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남 촌 도림동	도림동, 수산동(구월동으로 편입된 수산동 185-38, 185-39, 185-40,185-42,191-4,192-2,193,194-1,597-37 제외), 남촌동 일원
	논현동	2	논현1동	논현동 1-66, 68, 109-112, 322, 549, 577, 591-605, 607-17, 651-69, 671-80, 산1-산30번지 일원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1-1외 19필지)
			논현2동	논현동 423, 427-30, 432-440, 442-451, 453-454, 473, 491, 505~507, 513, 543, 553-554, 559, 560-564, 580, 582-583, 585-586, 588-590, 618, 633-635, 643, 산75-78, 산80, 산84-86, 산94, 산105번지 일원
	논현동 고잔동	1	논현고잔동	논현동 179, 264, 269, 272, 359, 383, 409, 630, 650, 756, 970, 산13-산16, 산19-산20번지 일원, 고잔동 일원,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혼재된 행정운영동(구월1동, 남촌도림동)을 구월1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천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행정운영동인 ‘남촌도림동’을 ‘구월1동’으로 변경함 (별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1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써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로 한다.

제12조 중 “제15조제6호”를 “제15조제1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입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로써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수시구입은 제외)
2.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주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부담이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에서”를 “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를 “관장이”로 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제2항의 행사 및 대회 입상자 등에게 독서문화상을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부터 제35조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7조로 하고, 제34조부터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4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 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 근무수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서관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근무수칙은 도서관 안내데스크 등에 이용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은 관장이 접수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를, 물품과 시설은 「인천광역시 남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의 예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 (제1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구 분	시 간		
세미나실 (문화교실)	주 간	4	20,000원	09:00 ~ 18:00
	야 간	4	30,000원	18:00 ~ 22:00
다목적실 (소극장)	주 간	4	30,000원	09:00 ~ 18:00
	야 간	4	50,000원	18:00 ~ 22:00

※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초과시 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2. 자료복사 수수료 (※ 변동없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흑백	칼라	
복 사 기	A4	40	70	1장당
	B4	50	80	
	A3	60	90	
프 린 터	A4	50	80	
	B4	60	90	
	A3	70	100	

3.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 내용 중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에 공공기관의 행사 포함(제10조제4항)
- 제15조 위원회의 각호 일반적 심의대상을 폐지하고 중요 결정사항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조정 (제15조 각호 폐지 및 신설)
- 독서문화상 포상 및 표창 (제31조제5항 신설)
-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운영 (제34조 신설)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제35조 신설)
- 도서관 시설사용료 개정 (별표 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1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관내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액)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② 충치 치료시 비급여 대상치아는 반드시 레진치료를 수반하여야 한다.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의

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아동 치과주치의 인력 현황

1. 치과주치의기관명 : (직인)

2. 치과주치의 인력현황

가. 현 황(비상근 인력은 제외)

구 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전체 인력			
치과주치의 담당인력			

※ 치과주치의 담당 인력 : 전체 인력 중 치과주치의 전담 인력 수를 기재하고, 특히 치과주치의 담당 치과의사의 수는 치과주치의 기관의 치과주치의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치과주치의사업을 전담하는 치과의사 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나. 치과주치의 담당 인력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	번 호	

※ “구분”란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하되 위 가. 현황표의 “치과주치의 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구강건강관리 담당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기재합니다.

※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서

청구기관	치과주치의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청 구 처 (보건소명)			
청 구 내 역			
항 목	치과주치의 구강진료비(A)	실시인원(B)	청구금액 (A×B)
치과주치의			
계			

우리 기관에서 . . . ~ . . .까지 실시한 치과주치의 구강진료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 구 일 :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2012. 09. 21. 금요일

(앞면)

학 교 명	학 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지역아동센터명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1. 치료필요치아(충치및발치) : 개				구강 보건 ☐ 기본 구강건강지식 교육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예방 진료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3. 치주질환 유, 무				치료 ☐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담당자

(뒷면)

[illegible]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의료지원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용어 정의 (제2조)
-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의료비를 지원함 (제5조)
- 지정 의료기관 검진결과에 따라 의료지원 제공 (제6조)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1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의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과 건강증진·질병예방과 재가복지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 「사업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시설의 위탁)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사업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기간을 상위법의 정해진 범위(5년) 안에서 재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기존 “2년” 에서 “3년” 으로 연장 (제5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9월 25일

남동구 조례 제111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을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10.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견인료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

제3조 중 “각호의 용도이외에는”을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용자금과 보조금

제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7. 차입금등 상환

제4조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2조제10호 및 제3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 주차요금, 과태료 및 견인료 등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2조)
-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3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437호

건설업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3)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처분의 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3)항(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때)
3.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처분종료일 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 한 때
4. 대상업체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보증가능금액실효일	처분내용
두인건설(주) 윤인용 (120111-0*****)	인천 남동구 논현동 671-3	금속구조물창조공사업 (인천연수07-08-01)	실효일:2011.03.15 영업정지기간: 2011.06.07~09.06	등록말소
석광건설(주) 리제임스준 (12461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1-3	토공사업(인천남구2001-02-05)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인천남구 2001-10-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인천남구 2001-13-01)	실효일:2011.05.03 영업정지기간: 2011.07.01~11.30	등록말소
		조경식재공사업(인천남동04-18-02)	실효일:2011.01.03 영업정지기간: 2011.03.21~06.20	

▶ 등록말소 처분일자 : 2012.09.21(금)

5.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우리구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등록말소일 이후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동법 제96조(벌칙)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http://kiscon.net/>),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440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구립도서관 비도서 구입』

나. 구매내역 : 비도서 1,160EA (MARC 구축용역 포함)

※ 도서 금액은 도서정가에서 15%가 절감된 금액이며 도서 MARC 작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 MARC, 도장, 감응테그 작업에 필요한 장비용 소모품은 납품업체에서 부담

다. 설계금액 : ₩16,435,000

라. 기초금액 : ₩16,435,000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사.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2. 09. 18(화) 12:00 ~ 2012. 09. 21(금) 12: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 09. 21(금) 13: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발주부서 및 담당자 : **문화체육과 김성만(☎032-453-5945)**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서적 도소매업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필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2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3.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선정하며** 동일가격으로 2인이상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등,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경리팀 담당 최현철(☎ 032-453-2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9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444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표준계량대 제작 및 설치』
- 나. 설치내역 : 불임 시방서 참조
- 다. 기초금액 : ₩17,82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 마.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 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2. 09. 19(수) 10:00 ~ 2012. 09. 24(월) 10:00**
-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 09. 24(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아. 발주부서 및 담당자 : 경제지원과 강민구(☎032-453-2697)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제작시방서(도안) 등의 내용에 관하여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입찰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나.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2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3. 입찰 방식

-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 나. 전자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이하로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선정하며** 동일가격으로 2인이상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

8.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등,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경리팀 담당 최현철(☎ 032-453-2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445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생년월일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및 부여사유	고시 사유
별 도 열 람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전화:032-453-2470)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 2012.9.19(수) ~ 2012.10.10(수) 22일간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 : 2012.09.07(금)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09.0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지내용의 정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공시송달 조서

연번	고지대상자	생년월일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및 부여사유	고시 사유
1	김은영	1981-12-08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2	정미숙	1977-02-20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3	정현미	1984-04-13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4	채은덕	1964-04-27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5	이동현	1983-01-09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6	유기남	1961-03-10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7	은종국	1981-05-19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8	김학수	1964-07-17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9	이재옥	1986-04-21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10	염웅선	1988-01-07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11	김선일	1959-09-25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12	서옥순	1944-11-01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13	김영미	1973-08-22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14	이나영	1985-01-07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15	(주)에센제이건설	124611-*****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16	손연주	1969-04-15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17	이한석	1958-01-07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44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9. 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발간부서 재정비
- 구보 보관(영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구보의 중요성 및 열람 제공

3. 주요 개정내용

- 가. 게재의뢰 및 게재조정 부서명칭 조문 변경(조례 제5조, 제6조)
- 나. 구보 보관(영구)에 관한 조문 신설(조례 제8조)
- 다.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번호 변경 (조례 제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정보미디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5-702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453-2173, FAX453-21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발간부서 재정비
- 구보 보관(영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구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열람 및 보관 관련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게재의뢰 및 게재조정에 관한 부서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 문화체육과장, 문화홍보실장 ⇒ 구보발행 부서의 장
- 구보 보관(영구)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8조)
-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번호 변경 (제8조에서 안 제9조로)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보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게재의뢰) 중 “문화체육과장”을 “구보발행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게재의뢰)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사항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실·장 또는 기관의 장은 게재하고자 하는 사항의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부서의 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게재조정) 중 “문화홍보실장”을 “구보발행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게재조정) 구보 발행 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하여 구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구보의 보관) 전자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영구 게시 제2조 2항에 따라 발행한 구보의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은 “제9조(시행규칙)”으로 조문번호를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게재의뢰) 제3조 및 제4조에 ----- ----- ----- ---문화체육과장에게 게재를 의뢰 하여야 한다.	제5조(게재의뢰) 제3조 및 제4조에 ----- ----- ----- --- 구보발행 부서의 장에게 게재 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게재조정) 문 화 홍 보 실 장 은 ----- ----- -----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게재조정) 구보발행 부서의 장 은 ----- ----- ----- -----아니할 수 있다.
(신설)	제8조(구보의 보관) 전 자 구 보 는 구 홈페이지에 영구 게시하고 제2조 2 항에 따라 발행한 구보의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9조(시행규칙) ----- ----- -----조문번호 변경

실·단·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 공고 제2012-38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지역의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12.9.18~12.10.1(14일간)

※ 단,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접수장소 : 만수2동 주민센터 (☎ 453-5402)

□ 대상지역 : 1통, 28통

□ 신청 자격 및 조건

● 해당 통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

●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 시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 신청서류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각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발방법 :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면접심사

□ 면접일시 : '12.10.4(목) 14:00

※ 후보자가 많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면접장소 : 만수2동 주민센터 1층 동장실.

2012. 9. 18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2동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4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9. 2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과 내·외국인 주민간 문화교류, 교육지원 등 사회통합 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남동하모니센터의 준공 및 개관·운영됨에 따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남동하모니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장 신설 : 제1장 총 칙

- 안 제1조(목적) ➡ 기존 내용 유지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 내용변경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기존 내용 유지
- 안 제4조(지원사업) ➡ 9호 신설(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안 제4조(지원사업) ➡ 10호 신설(내국인 주민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통합지원 사업)

- 안 제4조(지원사업) ➡ 9호에서 11호로 변경(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 6호 신설(내·외국인 주민의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지원)
- 안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 6호에서 7호로 변경(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장 신설 :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안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 안 제12조(수당 및 여비)
➡ 기존 내용 유지

○ 장 신설 : 제3장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안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내용변경
- 안 제14조(남동하모니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20조(위·수탁의 해지)
➡ 신설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남동하모니센터)의 시설·운영, 자원 봉사자,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6조)
 -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양도금지, 손해배상,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20조)

○ 장 신설 : 제4장 보 칙

- 안 제21조(포상) ➡ 내용변경
- 안 제22조(예산지원 등) ➡ 기존 내용 유지
- 안 제23조(준용) ➡ 신설
- 안 제24조(시행규칙) ➡ 기존 내용 유지

○ 부칙 : 기존내용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12, FAX 453-25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2012 -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 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10. 내국인 주민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통합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외국인 주민의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지원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다문화가족관련 주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남동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기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남동하모니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남동하모니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논현동)에 둔다.

③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사업
2. 다문화가족의 생활체육 활동 및 정보통신서비스
3. 다문화관련 자원봉사 연계 및 연구동아리 활동
4. 다문화관련 독서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활동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의 이용 등)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이하“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지원시설의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지원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 등의 손괴 및 망실에 대하여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수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제17조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제18조, 제1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자가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목적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관리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위·수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비품일체를 원상태로

남동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제22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 서 별 의 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102호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월삼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후 동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추진위원회 해산 내용

1. 명칭 : 구월삼보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사업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3. 사업시행예정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086번지 일원
4. 추진위원회승인일 : 2008. 5. 13.
5. 추진위원회승인취소일 : 2012. 9. 18.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10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9.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21-1외 6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185번길 11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7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09.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예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444-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21-1	20090710	장수천과 굴포천을 연결하려다 암석을 뚫지 못했다는 설을 인용하여 제명	2012.09.2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무네미로 221-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21-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37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9.2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주대로604번길 49-3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9-37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2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298	20091116	안단에 위치한 승기천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2.09.2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승기천로 29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8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1-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9	2009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9.2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692번길 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84번길	7	20091116	논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9.2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184번길 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1-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208번길	12	20091116	논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9.2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208번길 1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2를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1-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202번길	14	20091116	논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9.21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202번길 14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185번길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69-3	2012.09.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5	2012.09.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7-36	2012.09.2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